

#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 
번호

1437

제출년월일 : 2006. 02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 주요골자

- 가.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여 가족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(안 제3조).
- 나.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(안 제5조).
- 다.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6조).
- 라.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, 운영하므로 사업 수행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9조).

## 제정 조례안 : 별 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 첨
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1억4천만원

##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5. 12. 19 - 2006. 1. 7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별 첨

-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준칙안 시달(2005. 9 .13)

#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 기본법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명칭)** 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센터 명칭은 “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” 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4.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
6.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
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설)**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5조(조직)** ①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다.

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 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관련공무원,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.

④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자원봉사자)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.

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강사)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.

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

③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주민참여)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- ③(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가족여성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가족여성과 하 희 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담당 김 종 수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종 수 (행정 2209)